

경상북도체육회 정책자문관 운영에 관한 내규

제정 2022. 2. 14..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체육회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, 경북체육 미래발전 비전에 대한 자문 등 경상북도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의 주요정책에 대한 합리적 수립·운영을 위하여 두는 “정책자문관”(이하 “자문관”이라 한다)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촉) 회장은 체육회 주요정책 자문 등 미래 정책방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인의 자문관을 둘 수 있다.

제3조(임무) 자문관은 회장이 경북체육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.

1. 주요 현안과제 자문에 관한 사항
2. 경북체육 미래 100주년 발전에 관한 사항
3. 체육발전 자문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

제4조(임기)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경비지원)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월500,000원의 업무추진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보안 및 청렴 서약)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 및 청렴 서약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
2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
3. 체육회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다른 직무의 수행 금지
4.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직권 남용 금지
5.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 등

제7조(위촉해지) 제4조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은 자문관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자문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
2. 자문관으로서 품의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
3. 위촉 당시의 회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
4. 제6조에 따른 서약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5. 체육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등의 사유로 협력관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

부 칙(2022. 2. 14.)

(시행일) 이 내규는 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2. 14.)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보안 및 청렴 서약서

본인은 년 월 일부터 경상북도체육회 정책자문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1.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
2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
3. 경상북도체육회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다른 직무의 수행 금지
4.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직권 남용 금지
5.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 등

년 월 일

정책자문관

(서명 또는 인)

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